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실시요령 제정·시행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고병원성 AI의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을 제정·시행한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주요 제정 내용

- ◎ 사육규모 50제곱미터(m^2) 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①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 ②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소독 기준) 사육시설의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하고(제3조), 자신의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5조)
 - ② (방서 및 방충)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주, 곤충의 사육시설 진입을 차단하고 주, 곤충을 없애야 한다(제4조)
- ◎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역기준을 정리하여 소규모 가금농가가 알기 쉽게 이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차량 운전자의 소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6조)
 - ②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사육시설의 출입자·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
- ◎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가 해당 사육시설 및 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방충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차위반시)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 *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고시****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2. "축종"이란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를 말한다.

제3조(소독방법)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제4조(방서 및 방종) 소규모 농가는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육시설 내의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제5조(소독주기)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운전자 소독)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